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심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예방접종 등에 따른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전화번호’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안 제20조제1항)
- 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 증가 시 신속한 인과성 판단 등의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추가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 다.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전화번호’ 추가(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

라.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조문 정비(안 제23조)

마.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기관에 업무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예방접종 등에 따른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32조의3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복수의 피해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42조제2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3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를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 보상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 ----- ----- -----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u>구성한다</u> .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① ----- ----- ----- ----- ----- <u>구성하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상황</u>

② ~ ⑥ (생략) 제21조의2(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방접종 대상자가 국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예방접종 대상자의 성명, <u>주민등록번호 및 주소</u> 나.·다. (생략) 2.·3. (생략) ② (생략)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및 시설치료, <u>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u>	<u>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복수의 피해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 ----- ----- ----- -----. 1. ----- ----- 가. ----- <u>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u> 나.·다.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 ----- ----- <u>법 제42조 제2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u>----- -----.
---	--

1. ~ 5. (생략)

④ (생략)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③ (생략)

<신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3) 719 - 7101 (043) 719 - 7136